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0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안 제92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6.

다. 회 부 일 : 2025.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u>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92의2)</u> - 목적 :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 재원 1.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국민이 기부하는 기부금 2.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수령 대상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 - 용도 1. 국채·차입금 상환 2. 국가보증채무 이행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 - 관리·운용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기타 사항 :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 접수현황 및 기금 집행·사용내역의 공개

2024년 기준¹⁾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²⁾)의 GDP 대비 비율은 52.5%로, 미국(120.8%), 영국(101.2%), 독일(63.9%) 및 선진국 평균(108.5%)보다 낮은 수준임.

1) 국가부채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최신의 통계로 2025년 4월 IMF Fiscal Monitor에서 발표함

2) 정부부채의 범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를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및 OECD 등에서 정부부채를 국제 비교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D2)의 개념을 사용함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시행에 따라 본예산은 2020년 512조, 2021년 558조, 2022년 608조, 2023년 639조, 2024년 657조원이 편성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 2022년 및 2025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³⁾ 또한 2019년까지 40% 미만 수준에서 관리되던 것이 2025년에는 49.1%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국가채무 등(D1, D2, D3)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2015	591.5	34.0	676.2	38.8	1,003.5	57.6
2016	626.9	34.2	717.5	39.1	1,036.6	56.5
2017	660.2	34.1	735.2	38.0	1,044.6	54.0
2018	680.5	33.9	759.7	37.9	1,078.0	53.7
2019	723.2	35.4	810.7	39.7	1,132.6	55.5
2020	846.6	41.1	945.1	45.9	1,280.0	62.2
2021	970.7	43.7	1,066.2	48.0	1,427.3	64.2
2022	1,067.4	45.9	1,157.2	49.8	1,588.7	68.4
2023	1,126.8	46.9	1,217.3	50.5	1,673.3	69.5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자료: 기획재정부

3) 여기에서 쓰이는 국가채무 비율은 앞서 살펴본 D1, D2, D3 중 D1의 개념임.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채무비율	33.9	35.4	41.1	43.7	45.9	46.8	46.0	49.1

* 제2차 추경 기준

** 한국은행 GDP 기준년 개편 반영('15년 → '20년 기준년 개편, '24.6.2)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는 5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로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화제가 된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기부금과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 중 국민이 사전에 기부 의사를 밝힌 지원금을 재원으로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채 및 차입금 상환, 국가보증채무 이행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채무 감축과 건전재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기금 재원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기금이 기금 설치의 취지 및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서⁵⁾,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4) “5천조 원 국가채무 걱정되네…7만 원 기부한 프랑스인”, 연합뉴스TV, 2025.6.25.

5)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조성함.

그런데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재원인 기부금과 국민이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국가의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 의사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와 조성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⁶⁾, 기금 금액이 미미할 경우 기금의 실질적 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기금 재원의 불안정성은 특정 목적을 위한 지속적·안정적 자금 운용이라는 기금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자발적 기부금 모집은 국민에게 세금 납부 외에 추가적인 이중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국가채무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경제성장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현행법상 기금 재원 일부를 기부금을 통해 조성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나(기후대응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재원 전체가 기부금 등 불확실성이 큰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는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2조의2(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한다. ②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국민(단체를 포함한다)이 기부하는 기부금 2.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지원금의 수령 대상인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 ③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2. 국가보증채무의 이행 3. 그 밖에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채무감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에 기부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

현행	개정안
	금을 위한 기부금 접수 현황을 분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때에는 기부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160